

제9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참석 결과

□ 개요

- (일시/장소) '24.3.18(화)~3.27(목) 09:00~18:00(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약 100명

□ 이행위원회 (3.18~21)

○ NPFC 어업현황 보고서

- 사무국이 어종별 허가 선박 척수를 종합한 NPFC 어업현황(2019-2024년) 보고서를 제시하였음
- 회원국들은 보고서 내 일부 수치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 사무국은 수치 불일치 원인이 회원국별 상이한 집계방식과 복수의 어종을 조업하는 선박들을 중복 집계한 것에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어업현황 보고서 작성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음
- 보고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을 명시(disclaimer)하는 것의 적절성이 논의되었음. 보고서에 대한 포괄적인 부인은 적절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개별 의견을 제공할 수는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음
- 작년에 채택된 NPFC 문서정책에 따라, 어업현황 보고서를 정보문서가 아닌 작업문서로 변경할 것이 제기되었음*

* 정보문서: 회원국이 논의가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해 제출, 작업문서: 회원국 또는 사무국이 논의를 위해 제출

- 여러 회원국들이 어업현황 데이터와 '역사적인 수준' 논의가 연결이 되고 '역사적인 수준' 정의 수립 작업의 진전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EU는 과거 허가 선박 척수는 어획노력 통제를 위해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활동 중인 선박 척수 또는 조업일수와 같은 다른 수단으로 집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음
- 실행 소작업반(SWG Ops)이 회기간에 사무국과 회원국들의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인 수준' 정의 수립에 관한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였음

○ 이행감시제도

- 회원국 공해승선검색, 항공조사, 선박감시시스템, 전재 데이터 등에 의해 확인된 잠재적 불이행 사안들을 검토하였음

구분	불이행 사안	기국 소명	논의 결과
중국	보조선들의 마킹 불이행	(중국) 일부 선박들은 조업을 위한 스킵프 선박이 아닌 구명정이므로 마킹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료하였음	충분한 기국 조치가 있었으므로 "이행"
러시아	부적정한 마킹	(러시아) 제재가 완료되었고 일부 선박들은 국내적으로 요구되는 마킹을 함으로써 NPFC 조치상 요구되는 마킹의 이행 확인이 어려웠음	충분한 기국 조치가 있었으므로 "이행"
대만	마킹이 박스에 의해 은폐	(대만) 제재가 완료되었음	충분한 기국 조치가 있었으므로 "이행"
중국	미보고된 콩치 혼획량을 집계할 경우 콩치 어획한도 초과	(중국) 미보고된 양을 집계하더라도 중국의 콩치 어획한도 미만임	조치 해석에 이견이 있으므로 "평가 불능"
대만	플라스틱 조각재 해상 투기	(대만) 제재가 완료되었고 선상 쓰레기 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지도하였음	충분한 기국 조치가 있었으므로 "이행"
중국	IUU 선박과 전재 수행	(중국) 새로운 선주에게 폐선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합의 전략의 일환이었음	"불이행"
중국 러시아	참고등어 및 일본 정어리 어획노력 제한 초과	(중국) '18년부터 109척으로 제한 중 (러시아) 역사적인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지 않았음	역사적인 수준에 대한 정의 부재로 "평가 불능"

- 이행감시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제안되었음: ① ‘반복된 불이행’과 별도로 ‘우선순위 불이행’ 정의 수립 ② 각 의무에 대한 평가요소(audit point) 수립 ③ 계량적 의무들에 대한 이행평가 방법론 수립 ④ 개별 선박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회원국의 후속조치를 평가하는 과정 수립

○ IUU 선박목록

- 회원국 공해승선검색 활동으로 중국 선박 3척이 등재 제안되었음

제안	사유	기국 소명	논의 결과
일본	① 선박 외관이 NPFC 등록부 사진과 불일치 ② 공해승선검색 수용 지연	(중국) ① 행정 실수로 잘못된 사진이 등록되었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검토 과정을 수립하였음 ② 선박 청소 및 안전상 이유로 인한 지연이었고 증거 인멸이 없었음	충분한 기국 조치가 있었으므로 제안 철회
캐나다	여기 종료 후 미보고된 콩치를 선상 보유	(중국) 조사가 완료되고 제재금이 부과 및 납부되었고 불법 어획물은 몰수되었음	충분한 기국 조치가 있었으므로 제안 철회
캐나다	여기 종료 후 미보고된 콩치를 선상 보유	(중국) 캐나다가 위반보고서를 늦게 전달하여 제재 과정 완료 시간이 불충분하였음	총회에 회부

- 콩치를 목표로 하지 않는 선박들의 콩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 국내법과 NPFC 조치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었고, 선장에 대한 제재 정도의 적절성, 제재가 진행 중인 사안을 IUU 선박목록에 등재하는 것의 적절성이 논의되었음
- 중국은 비목표 선박들의 콩치 보유를 허용하면 콩치를 목표로 하게 될 수 있음을 제기하였고, 향후 NPFC 조치와 부합하도록 부수어획도 모두 보유 및 보고하도록 하고, 동일한 위반 발생 시 폐선까지 고려할 것임을 언급하였음
- 3번 선박만 총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1,2번 선박은 미등재에 합의함

- 총회에서 중국은 추가 소명을 하였고* 3번 선박도 미등재에 합의함

- * (중국) ① 3.20일자로 선박에 대한 제재 과정이 완료되었고 선주가 제재금을 납부하였음
 ② NPFC CMM과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고 동일한 위반이 있을 경우 조사 기간 동안 허가를 취소시키겠음 ③ 공해승선검색에서 확인된 사항들은 오피서버에 의해 확인되었어야 할 사안임을 인정하고, 국내오피서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⑤ 세관 당국과 협력하여 양륙 검색을 강화하고 공해승선검색을 계속하겠음

- 기존 IUU 선박목록에는 변동사항 없음*

* IUU 선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WAN TOM(기국: 코모로스)은 방글라데시와 중국으로부터 폐선되었다는 정보가 제출되었으나, 정보의 신빙성 문제와 IUU 선박목록 삭제 절차는 기국만이 개시할 수 있음을 이유로 삭제 미합의

□ 재정행정위원회 (3.22)

○ 위원회 예산안

단위: 엔(¥)

구분	2025/26	2026/27	2027/28	2028/29
위원회 예산	165,881,708 (약 16.47억원)	179,614,054 (약 17.83억원)	189,519,965 (약 18.81억원)	193,048,264 (약 19.17억원)
전년비 증감율	2.75% 감소	8.28% 증가	5.52% 증가	1.86% 증가

○ 한국 분담금

- (2025/26) 7,483,443엔 (약 7,430만원) (전년비 4.49% 증가)
- (2026/27) 8,263,657엔 (약 8,205만원) (전년비 10.43% 증가)

○ 운영자본기금(Working Capital Fund)

- 운영자본기금(예비비)의 적정한 규모를 공식적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무국이 과거 재정위 논의와 절차규칙을 토대로 적정한 규모에 대한 옵션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음

○ 직원 보수

- 현재 사무국 내 일반직(2명)을 위한 급여호봉표가 부재하여 우수한 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해 국제표준을 고려한 급여호봉표 수립이 사무국장에 의해 제안되었음
- 직원 보수 산정 시 '17년부터 고정환율(124.3 엔/달러)을 적용해 왔으나, 엔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직원들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하여, 변동환율을 적용하고 물가상승이 반영될 수 있는 보수체계를 사무국장이 제안함
- 회원들은 사안의 복잡성을 인정하였고, 옵션들을 고려하기 위해 회기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의장단 선출

구분		이름	소속
총회	의장	Shingo Ota	일본
	부의장	Jung-re Riley Kim	한국
이행위	의장	Alisha Falberg	미국
	부의장	Amber Lindstedt	캐나다
재정위	의장	Haruo Tominaga	일본
	부의장	Bernard Blazkiewicz	EU

○ 차기 회의 (제10차 총회, 제9차 이행위, 제8차 재정위)

- (일자) '26.4.8(수)~4.17(금)
- (장소) 일본 내 도쿄 이외 도시

□ **총회** (3.24~27)

○ 7개 보존관리조치 제안서 합의

제안서 (발의)	주요내용																					
태평양 공치 (일본,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에 전체수역* 내 태평양 공치 어획량을 '24년 대비 10% 감축 ('24년: 225,000톤 → '25년: 202,500톤) <li style="padding-left: 20px;">* 협약수역과 연안국 관할권 이내 수역 - 협약수역 내 태평양 공치 총허용어획량(TAC)을 전체수역 연간 어획한도의 60%로 제한('25년: 121,500톤) - '25년에 각 회원은 자국 태평양 공치 연간 어획량을 2018년 어획 보고량 대비 55% 감축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fe2f3;">회원</th> <th style="background-color: #cfe2f3;">'18년 보고량(톤)</th> <th style="background-color: #cfe2f3;">'25년 한도(톤)</th> </tr> </thead> <tbody> <tr> <td>중국</td> <td>90,365</td> <td>40,664.25</td> </tr> <tr> <td>일본</td> <td>46,859</td> <td>21,086.55</td> </tr> <tr> <td>한국</td> <td>20,759</td> <td>9,341.55</td> </tr> <tr> <td>러시아</td> <td>5,459</td> <td>2,456.55</td> </tr> <tr> <td>대만</td> <td>180,466</td> <td>81,209.7</td> </tr> <tr> <td>바누아투</td> <td>8,231</td> <td>3,703.9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이 자국 태평양 공치 연간 어획량을 2018년 어획 보고량 대비 65.5% 감축할 경우, TAC 90% 도달 시 수척*이 면제 <li style="padding-left: 20px;">* 모든 회원들의 합산 어획 보고량이 TAC 90%를 도달하면 어획한도 10,000톤 초과 회원들은 72시간 내 조업중단, 10,000톤 미만 회원들은 자국 어획한도 90% 도달 시까지만 조업 허용 - 회원 및 CNCP들은 공치 조업선들이 기타 NPFC 어종들의 어획 및 폐기를 기록하고 기국 당국에 보고하도록 보장 - 회원 및 CNCP들은 공치 폐기량을 자국 어획한도에서 차감 - 본 조치는 2025년 5월 1일에 발효 	회원	'18년 보고량(톤)	'25년 한도(톤)	중국	90,365	40,664.25	일본	46,859	21,086.55	한국	20,759	9,341.55	러시아	5,459	2,456.55	대만	180,466	81,209.7	바누아투	8,231	3,703.95
회원	'18년 보고량(톤)	'25년 한도(톤)																				
중국	90,365	40,664.25																				
일본	46,859	21,086.55																				
한국	20,759	9,341.55																				
러시아	5,459	2,456.55																				
대만	180,466	81,209.7																				
바누아투	8,231	3,703.95																				
북서태평양 저층어업 및 취약해양생태계 보호 (과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한 해양생태계(VME) 지표 중 한류성 산호들의 통상명칭과 학명 간 대응표를 부록에 추가 - 저층어업 금어수역 2개소(유라쿠 해산 북동부 및 남서부) 추가 																					
북동태평양 저층어업 및 취약해양생태계 보호 (과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한 해양생태계(VME) 지표 중 한류성 산호들의 통상명칭과 학명 간 대응표를 부록에 추가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등어 (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에 협약수역 내 참고등어 총허용어획량을 66,740톤으로 감축 ('24년: 94,000톤 → '25년: 66,740톤) - '25년 트롤선 어획량을 7,940톤으로 감축('24년: 14,000톤 → '25년: 7,940톤) - '25년 선망선 어획량을 58,800톤으로 감축('24년: 80,000톤 → '25년: 58,800톤) - '25년에 EU에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참고등어 어획량을 4,260톤으로 감축('24년: 6,000톤 → '25년: 4,260톤) - 회원 및 CNCP들은 참고등어 조업선들이 기타 NPFC 어종들의 어획 및 폐기를 기록하고 기국 당국에 보고하도록 보장 - 트롤선과 선망선의 경우, 회원들은 자국 어획한도 60% 도달 이후부터 주간 어획보고 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선박감시시스템 (VMS) (작업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수역 입·퇴역 시 사무국에 보고 실시 - 보고 옵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0%;">옵션</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선박이 협약수역 입·퇴역 시 자동적으로 보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협약수역 외곽 20해리 구역을 외부 VMS 구역으로 설정하고, a) EEZ 또는 공해에 관계없이, 이 외부 VMS 구역 내 있을 때 모든 위치에 대해 보고하거나, b) 외부 VMS 구역 내 공해에 있을 때는 모든 위치를 보고하고, EEZ에서 협약수역으로 입역할 때는 마지막 위치와 입역 후 최초 지점만 보고하고, 퇴역 시 마지막 위치와 퇴역 후 최초 지점을 보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a) 협약수역 입퇴역 전 마지막 위치와 입퇴역 후 최초 위치를 보고하거나, b) 입역 후 최초 위치를 NAF 형식 내 "메시지 유형"에 자동 신고로 보고하고, 퇴역 후 최초 위치를 NAF 형식 내 "메시지 유형"에 자동 신고로 보고</td> </tr> </tbody> </table>	옵션	내용	1	선박이 협약수역 입·퇴역 시 자동적으로 보고	2	협약수역 외곽 20해리 구역을 외부 VMS 구역으로 설정하고, a) EEZ 또는 공해에 관계없이, 이 외부 VMS 구역 내 있을 때 모든 위치에 대해 보고하거나, b) 외부 VMS 구역 내 공해에 있을 때는 모든 위치를 보고하고, EEZ에서 협약수역으로 입역할 때는 마지막 위치와 입역 후 최초 지점만 보고하고, 퇴역 시 마지막 위치와 퇴역 후 최초 지점을 보고	3	a) 협약수역 입퇴역 전 마지막 위치와 입퇴역 후 최초 위치를 보고하거나, b) 입역 후 최초 위치를 NAF 형식 내 "메시지 유형"에 자동 신고로 보고하고, 퇴역 후 최초 위치를 NAF 형식 내 "메시지 유형"에 자동 신고로 보고
옵션	내용								
1	선박이 협약수역 입·퇴역 시 자동적으로 보고								
2	협약수역 외곽 20해리 구역을 외부 VMS 구역으로 설정하고, a) EEZ 또는 공해에 관계없이, 이 외부 VMS 구역 내 있을 때 모든 위치에 대해 보고하거나, b) 외부 VMS 구역 내 공해에 있을 때는 모든 위치를 보고하고, EEZ에서 협약수역으로 입역할 때는 마지막 위치와 입역 후 최초 지점만 보고하고, 퇴역 시 마지막 위치와 퇴역 후 최초 지점을 보고								
3	a) 협약수역 입퇴역 전 마지막 위치와 입퇴역 후 최초 위치를 보고하거나, b) 입역 후 최초 위치를 NAF 형식 내 "메시지 유형"에 자동 신고로 보고하고, 퇴역 후 최초 위치를 NAF 형식 내 "메시지 유형"에 자동 신고로 보고								

<p>전재 오퍼버 프로그램 (작업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수역 내 전재 및 어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보존관리조치 이행 감시를 위한 제도 수립 - '오퍼버 서비스 제공업체*', '오퍼버', '승인된 오퍼버' 정의 수립 * 회원들은 오퍼버 제공자에 정부기관이 배제되어서는 안됨을 표명 - 세부 내용: 오퍼버 배치 계약, 오퍼버 승인 및 훈련, 오퍼버 책임 및 권리, 비상수칙, 오퍼버 비용, 조치 발효('26.1.1)
<p>전재 (캐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1.1부터 모든 전재 보고*'는 NPFC 온라인 시스템으로 실시 * 사전 보고, 보고 변경 및 취소, 사후 보고 - 모든 전재 보고에 부수어획종도 포함되어야 하고 FAO 어종코드를 사용하여 기록 - 전재 및 기타 이전 활동 신고 수정 범위: 전재 및 기타 이전 활동이 신고된 예정 시각 72시간 이내 또는 신고된 예정 장소 50해리 이내에서 실시되지 않으면 수정 신고 필요(기존: 24시간, 20해리) - 오퍼버가 없을 경우 어선은 전재 수행 불가 - 2개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전재하고자 할 경우 2명의 오퍼버가 임무수행을 하지 않는 한 척씩 전재 실시

○ 3개 보존관리조치 제안서 미합의

구분	주요내용
<p>정어리, 빨강 오징어, 살오징어 (일본)</p>	<p>(제안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정어리, 빨강 오징어, 살오징어를 하나의 보존관리조치 (2024-11)로 규율하고 있으나, 정어리를 위한 별도 조치를 제정하고 2024-11은 빨강 오징어와 살오징어만을 위한 조치로 개정 - 정어리 어획 사망률 감소를 위해 기존 선박 척수 제한 대신 정어리 어획한도 수립* * '25~'26년에 회원 및 협력적 비회원들은 자국 정어리 연간 어획량을 '21~'23년 평균어획량의 70% 이하로 감축 <p>(논의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회원들은 30% 감축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과학위에서 검토되지 않았음에 우려를 표명하여 일본은 내년에 다시 제출할 것임을 언급하고 제안서 철회

<p>항만국 조치 (한국, EU)</p>	<p>(제안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FC 어업에 관여한 외국 어선에 적용되는 항구검색 최소기준 수립 <p>(논의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대하는 회원이 있어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기간 작업하기로 함
<p>데이터 수집 표준화 (EU)</p>	<p>(제안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평가 등 과학작업에 필요한 어업 활동 데이터의 수집, 보고, 검증 및 교환에 관한 최소기준 수립 - 선장은 매일 전자적 조업일지를 작성(비목표종 접촉, 무어획 정보 포함) - 선장은 어법별 최소 요구정보를 항차 및 전재 종료 후 15일 이내 국내 당국에 보고 - 회원 및 협력적 비회원들은 협약수역 내에서 어획된 모든 어종들의 "활어" 기준 연간 총증량을 집계하여 익년 2.15까지 보고 <p>(논의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세부 내용에 대해 과학위 소작업반에서 검토하기로 함